

청원심의회 출석통지서

출석부서	
출석이유	
출석일시	년 월 일 시
출석장소	
유의사항	1.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2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
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장 (서명 또는 인) 0 0 0 귀하	